

광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가단5013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문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8. 체결된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15,141,09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 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31. E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2,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무렵 신용카드 발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25024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5. 21. ‘E는 원고에게 13,344,598원 및 그 중 4,438,099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28%, 208,050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8,032,050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E는 2020. 1. 8.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E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F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20. 12. 2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57,739,629원에서 교부권자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한 배당액 183,160원,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H에 168,918,252원, 위 F조합에 18,785,259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69,825,9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0. 12. 2. 피고를 상대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15,141,094원의 양도 및 양도통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카단2492호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E에게 위 인정사실 가.항 기재 대출 및 신용카드발급 계약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3.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E 및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요지

피고는 배우자인 I 명의로 E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E에게 대여금 354,580,000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 E는 먼저 1억 원을 분할해서 변제하겠다고, 2020. 1. 8.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E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지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E의 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경위 및 당시 E의 경제상황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에게 배당금 69,825,95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위 인정사실 라.항 기재 가처분으로 인하여 위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변론종결일 기준 피보전채권액인 17,665,804원¹⁾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²⁾ 15,141,09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인 E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별지 목록 기재 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범위가 15,141,094원에 한정되는 이상,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별지 목록

금 15,141,094원 정

광주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이 소외 대한민국
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지급(출급)청구권 중 위 금액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아파트

1층 1153.22㎡

2층 1119.62㎡

3층 1119.62㎡

4층 1119.62㎡

5층 1119.62㎡

6층 1119.62㎡

8층 1119.62㎡

9층 1119.62㎡

10층 1119.62㎡

11층 1119.62㎡

12층 1119.62㎡

13층 1119.62㎡

14층 1119.62㎡

15층 1119.62㎡

16층 1119.62㎡

17층 1119.62㎡

지하층 1120.55㎡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면적 134.2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대 16847㎡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6847분의 57.521

1) 위 지급명령상 13,344,598원 및 그 중 4,438,099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1. 19.까지 557일간 연 19.28%, 208,050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위
2021. 11. 19.까지 연 23.5%, 8,032,050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위 2021. 11. 19.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2)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 기재금액 참조